

그레코-이집트 법률의 상속 계약과 칠십인역의 디아테케

아드리안 센커*

1. 서론: 칠십인역의 diatheke의 문제

그리스어 칠십인역(이하 LXX)은 히브리어 베리트(בְרִית)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testament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 διατηκε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그리스어 단어는 그 히브리어와 단지 부분적으로만 뜻이 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의무”(협약에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양 당사자 또는 어느 한 편이 떠맡은 의무)라는 뜻을 포함한다. 이러한 LXX의 선택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제안된 가설은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대의 파피루스 문헌들에 나타난 당대의 이집트 상속법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X이 법률 용어인 testament를 선택한 것과 그 상속법 사이의 관련성을 주제로 내세운 연구는 아직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러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는 그레코-이집트의 법률을 다루는 역사학자도 아니요 파피루스 문헌학자도 아니므로,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연구 결과들에 당연히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창세기 6장, 9장, 15장 및 17장에 기록된 언약(בְרִית “베리트”)

창세기에서 “언약”(베리트)이 개재된 첫 번째 네 이야기들은 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네 단락들 중 셋은 제사장 전승(P)에 속한다. 주님이

*스위스 프라이백 대학교 교수(구약학). Biblia Hebraica Quinta 편집 책임자.

노아에게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을 멸하겠다고 알릴 때에 그는 땅과 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6:13). 대홍수가 지난 후, 주님은 창조의 여명기에도 그러했듯이(1:22,30—P) 짐승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을 다시 허락하였다(8:17). 야훼스트 전승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들의 존속(8:21)은 땅의 존속(8:22)과 서로 맞물려 있음을 말한다. 노아에게서 출생한 두 번째 인류 역시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받는다(9:1,7). 1절과 7절에 이러한 명령이 반복된 것은 수미(首尾)쌍관법적인 틀을 형성하며 주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땅 사용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땅을 향유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아담에게서 출생한 첫 번째 인류가 받은 그것과 유사하다(1:28-29). 그러나 9:1,7에서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다. 첫 번째 인류의 경우에서처럼, 두 번째 인류에게도 다른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9:9-11) 언약(베리트)은 명시적으로 사람들과 짐승들 양쪽에 대해 “세위”지므로(10절), 그 언약은 살아있는 존재들 중 이들 두 거대한 종족들에게 모두 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공통점은 땅을 차지하고 향유하는 권리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 밖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재산인 땅의 소유권을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주었다. 그 허가는 기부자 또는 증여자의 일생 동안 효력을 갖는 사용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권리는 증여자의 분명한 의사에 의해서 그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어졌다. 즉 그의 일생 동안 (9:12-17, 달리 말하면 “영세까지”) 땅의 사용권이 항상 유지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 15:18에서도 베리트, 즉 언약은 토지를 하사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 . .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7:8(P)도 토지 하사를 testament 즉 διαθήκε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언급한다. 왜냐하면 그 조상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데(17:2-7) 이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소유해야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 하사는 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의 전제이다. 창 17:1-8의 언약 이야기를 앞에 나온 창 15에 비추어 읽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토지 하사의 재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언약을 처음으로 언급한 대목들은 토지 사용 허가와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짐승들과 사람들이란 두 개체군에게 땅을 통째로 주기도 하고, 또는 땅의 일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토로 약속

해 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언약과 토지 하사가 결합된 구조이다. LXX의 번역자들이 특정 단어와 마주쳤던 첫번째 문맥들을 토대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들 간에 뜻이 일치되도록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¹⁾ 창세기를 삼등분한 첫번째 부분에서 토지 사용 허가의 문맥이 반복된 것은 베리트의 동의어로 διατηκεε를 채택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토지 증여와 관련하여 주전 3세기 그레코-이집트의 상황에서 διατηκεε가 실제로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3. 그레코 이집트의 상속법

3.1. 그레코-이집트 법률에서 부친의 재산 분배

톨레미 왕조가 다스린 이집트에서, 상속법은 유언장뿐만 아니라 사망시에 자식들에 대한 부친의 재산 분배 및 배우자들 사이에 이뤄진 상속 합의들도 인정하였다.

우선 그레코-이집트 법은 모든 재산과 상속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시키는 포괄적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상속이 이 부채들로 인하여 방해가 가 되긴 하였으나, 상속 자체는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물(재산)의 전체로 여겨졌다.

유언적 어휘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언장들에서 뿐만 아니라 부친의 재산 분배 증서와 상속 협의 증서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증서들도 상속할 재산들을 처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코-이집트 유언장들은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유언장들은 공증된 증서들이고 증인들에 의해서 보증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3인칭으로 쓰여진 서언을 가지고 있고, 이 서언에 이어서 유언자의 관점에서 1인칭으로 쓰여진 본론이 나온다. 이 유언들은 고유한 형태의 표현들을 사용한다. 현존하는 그레코-이집트 유언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들은 파용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전 238-225 에 쓰여진 것들이다. 이것들은 「페트리 단편 파피루스」에 한 수집물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서, 군인들의 유언장들이다.

부친의 재산 분배 증서는 유언장이 갖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지는 않으나 유언장들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그레코-이집트 법은

1) 역자주: 창 17:7에 두 번 나오는 “언약”은 불가타에서 “pactum”과 “foedus”로 번역되었다.

diatheke(유언장)의 형태로 표현된 상속 의사와 부친의 재산 분배 증서나 상속 협의 증서 등의 또다른 형태의 상속 의사를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3.2. 사후의 재산분배, P. Ups. Frid 1

P. Ups. Frid 1 은 부친의 재산 분배 증서이며, 이것은 실제로 유언장과 동등한 증서이다. 이것은 문서화된 협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협약 당사자들 중 오직 한 사람만, 즉 자기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증서는 하나의 omologia 곧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양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선언이 명시되어 있고, 이 문서적 선언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협약들은 3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협약(P.Ups. Frid 1)은 주후 48년 7월 24일 날짜로 되어 있다. 이 협약 증서는 재산 분배가 부친의 사후에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II. 6, 9, meta ten eautu teleuten).

이 증서에서 아버지인 소테리코는 자식들 사이에 그의 재산을 분배해 놓았다(metarikenai, 완전 부정사, 1. 6): 그의 아들 아폴로니오, 그의 딸들인 이사루와 에세르시티와 그들의 남편(그의 사위들) 곧 이사루의 남편 헤라클레이테스와 에세르시티의 남편 헤류스(II. 2-5). 재산의 목록은 증서의 6-10 째 줄에 기록되어 있다. 소테리코가 그 해에 죽게 될 가능성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1: 11). 이 경우, 그의 딸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폴로니오가 의무사항들을 시행하게 된다 (II. 12-13). 그는 부친의 임종시 부친이 상속으로 남겨둔 또 다른 상속물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의 부친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던 소유물의 2/3를 그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1/3은 과부가 될 그의 어머니 타우시리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그의 어머니는 소테리코가 남겨 놓은 집의 방 하나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II. 14-16). 타우시리스의 죽음 후에, 아폴로니오는 30일 이내에 일종의 지참금에 해당되는 얼마간의 돈을 그의 누이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II. 16-18). I. 19에 의하면, 소테리코는 그의 원대로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재산 처분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널리 인정된 바와 같이 이 마지막 절의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따라서 소테리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의 재산의 일부에 관한 처분권은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 파피루스의 편집자가 어떻게 I. 19를 재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편집자의 재구성은 이와 유사한 증서인 BGU 86를 바탕으로 행해지는데, 이것은 공증된 증서로서 스토토에티스라는 “증여자”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II. 23-25). 이 파피루스는 파음에서 나온 것으로, 주후 155년에 기록된 것으로서, P. Ups. Frid. 1과 매우 유사하다. 미테이스는 비록 이것이 6인의 증인들에 의해서 서명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는 유언장의 전형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주장한다. 그 형태는 P. Ups. Frid 1과 같이, *omologia*의 형식으로 쓰여진 상속 협의 증서이다(사후에 시행되는).

마찬가지로, P. Ups. Frid. 1은 형식상 유언장이 아니라 상속 협의 증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증여자” 소테리코와 그의 아내 타우시리스와 그의 세 자식들 간에 맺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kataleipein*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II. 10, 14), 이 단어는 유언장에서 발견되는 전형적 어휘로서 이 협의 증서가 유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르웰린에 의하면, 이 경우에, 아버지 소테리코가 II. 12-13에 언급되어 있는 의무사항들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후의 재산 분배 증서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절이 소테리코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긴 하지만, 기실 그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자신 스스로 이 의무사항들을 이행해야 하며 또한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소테리코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 아폴로니오와 그의 아내 타우시리스에게 그의 동산(動産)을 넘겨 주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II. 14-16). 만일 I. 19에 대한 편집자의 reading이 옳다면, 소테리코는, 유언장에서의 경우처럼 증여자가 자신의 유언장을 쓴 이후에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듯이,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 모든 것이 소테리코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할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재산 권리 증서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마지막 절이다. 실제 상속자들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소유주들은 되지 않았지만 재산 분배 증서가 허락한 부동산의 “실제적” 소유자가 된 것이다(II. 6-10).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그의 사후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문귀는 반드시 “죽음 이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증여자가 죽을 때까지의 전 기간 동안에”를 의미할 수도 있다.

3.3. 사후 재산 분배 증서의 효력

사후 재산 분배 증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협약의 형태로 되어있는 유언장이다.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소테리코 혼자서는 철회할 수 없는 “유언장”이다. 자식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로마의 한 행정 조치는 이와 같은 권리 주장의 사례들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행정 조치는 주후 89년에 메티우스 루푸스라는 이집트의 장관에 의해 선포된 법령이었는데, 이것은 옥시린쿠스와 혹은 옥시린쿠스를 포함하여 부동산 등기소가 있는 또 다른 지역들을 위한 것일 것이다. 옥시린쿠스 등기소는 이 문제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 결국 등기에 관한 완전한 재검토 작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장관은 모든 소유권을 재등기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그것을 등록해야만 했다. II. 34-36에 의하면, 아내들과 자식들은 재산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를 등기하도록 명백히 초대되었다: “여인들은 그들의 소유물들이 유코릭 법에 따라서 확보된 것이면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등기해야만 한다. 자식들 또한 재산에 대한 부친의 사용권이 공적인 문서에 설정되어 있거나 부친의 사후에 양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부친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며, 이렇게 하여 이 소유권 협약에 관여된 사람들이 소유권에 관한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 합의 증서들에서는,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의 주인으로서 계속 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합의의 협약적 특성은 이 합의에 대한 철회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P. Ups. Frid 1, II. 19-20; BGU 86, II. 23-24에서 처럼) 이 합의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4. 죽음의 상황에서 본 유언장과 협약 증서의 상대적 이점

유언장은 일방적으로 철회되거나 고쳐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은 증여자가 죽기 이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 합의 증서와 유언장의 이 간략한 비교는, 그레코-이집트 법률에는 증여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일한 장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장치가 바로 증여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

를 분명히 명기하여 공증한 협약서의 형식으로 쓰여진 재산 분배 증서이다.

이와 같은 명기 사항이 없는 경우, 소유권(ktesis)은 상속자에게 넘어가고, “증여자”에게는 상속물(ksresis)의 사용권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명기 사항이 있는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있는 반면, 상속물의 사용권은 살아 있는 “증여자”에게서 상속자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상속자는 부동산의 미래 소유권과 동등한 권리에 해당되는 소유권, 즉 katokse를 갖게 된다.

상속 협의 증서는, “증여자”의 소유권에 관한 약정사항이 명기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후 재산 분배 증서이다. 이 표현은 재산 분배 협의 증서가 유언장의 경우처럼 반드시 “증여자”가 죽은 다음에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협약 증서에 명시된 권리들이 “증여자”가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상속물에 대한 다른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협약 증서가 그의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협약 증서에 명시된 권리들은 이 협약이 다시 협상되지 않는 한 증여자가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레코-이집트 법은 사후 재산 분배 협약 증서와 유언장의 특징들을 혼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증여자”가 재산 분배 증서를 기록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협약 증서에 명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은 유언장의 이점과 사후 재산 분배 협약 증서의 이점을 혼합하는 것이다. 유언장의 이점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고, 협약 증서의 이점은 재산의 분배가 “증여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옥시린쿠스 파피루스에서 사후 재산 분배 협약 증서 하나가 *perikataleipseo omologia*라고 명명되어져 있다.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 *syngrafodiatheke*이며, 이것은 의심할 바없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해당된다. 이것은 파퓌스에서 나온 것으로서 톨레미 에베르게티스의 파피루스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파피루스는 주후 98년에 기록된 것이다. 이 파피루스는 결혼 협약 증서로서 신랑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신랑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일한 용어가 주후 142년에 쓰여진 한 옥시린쿠스 파피루스에서도 나타난다. 두 장소에서 유래된 파피루스에서 이 전문 용어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용어가 주후 1세기와 2세기에 이집트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었던 법률 용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문서들은 일종의 혼합 문서로서 형식상으로는 재산 분배 증서이나 내용상으로는 유언장에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3.5. 결혼 증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유언장

이 시점에서 결혼 계약 증서도 부친의 재산 분배 증서와 마찬가지로 유언적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첨언하고자 한다. 한 유명한 예가 엘레판트 파피루스 2 인데, 이것은 주전 285, 284 혹은 283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식상, 이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의 협약 증서이다. 그러나 세 아들이 거기에 인장을 찍고 있고, 그들의 부모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행사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도 역시 이 협약 증서의 수혜자들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협약 당사자들이 그리스인들이었고, 그 협약은 *syngrafe*와 *omologia*로 불리었다(II. 1-2). *Omologia*에 의해서 선언된 협의 내용은 유언장의 전형적인 동사들이 사용되었다: *tade dietheto Dyonusio* (I. 2), *katalepein ta uparchonta* (II. 3, 5, 6, 14). 이 협약 증서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실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세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II. 8-9), 그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부모의 부채를 갚아 주어야 하며, 합당한 장례를 치루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그들에게 은 1000 드라크마의 벌금형이 주어 진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II. 10-13). 양친의 사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부모의 부채를 떠맡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II. 13-15). 이 문서는 다섯 명의 증인 앞에서(II. 17-18), 헤라클리테스라는 공증인(*syngrafofulach*)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II. 13-15). 이와 같은 계약 증서를 *syngrafofulach* 증서, 즉 사법(私法) 영역의 한 공식적 증서라고 불리었다.

요약하면, 이 계약 증서는 부모의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모와 아들간의 상속 계약 협의이다. 여기에서 괄목할 만 한 점은 *omologia*에 의해서 협약되고 선언된 이 협의는 하나의 유언장이라는 사실이다: *tade dietheto Dionusio*. 그러나 이것은 유언장이되, 협약 증서의 형식으로 쓰여진 유언장이다. 따라서, 이것은 *diatheke*라고 불리지 않고, *syngrafe kai omologia*로 불렸다.

3.6. 결론: 그레코-이집트 법 안에서의 협약적 유언 증서

그레코-이집트 법은 협약 증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속 의사를 인정한다. 실제 유언장들과 비교할 때, 상속 문제를 다루는 이 방법은 증여자에게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 협약 증서는 가문의 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자와 상속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사용권, 소유권, 보장)의 한계를 설정한다.

4. LXX인역에서 berit의 대용어로서 diatheke를 선택한 이유

만일 LXX인역이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창 6, 9, 15, 17) 사용되어진 용어인 berit, "covenant"가 땅의 지속적인 사용허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역자들은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보장된 허가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를 찾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단어는 가변적인 인간의 거래 위에 불변성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는 법적 용어이어야 했다.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주어지는 법적 차원에서의 “땅의 사용 허가”는 이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허가는 땅에 대한 이중적 권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바, 땅의 소유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리(레 25:23,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와 사용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간과 동물들의 권리,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 둘 다를 동시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허가에 있어서, 살아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은 어떤 재산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취소될 수 없이 넘어가는 협약적 행위이다. 수여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재산의 사용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과 인간, 동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있어서의 땅에 대한 권리 배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경우, 땅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쪽은 후자 곧 인간과 동물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반면, 하나님은 주인 즉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수여자이며, 인간과 동물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수혜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수여되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땅의 사용 허가를 내포하고 있는 언약을 표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다른 한편, 그레코-이집트 법에 있는 사후 재산 분배 증서와 상속 협의 증서는 언약적 차원에서의 땅의 허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증서들이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만들어지고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실제, 이러한 증서의 경우, 소유주 곧 증여자는 그의 재산을 분배라는 차원에서 상속자에게 넘겨주면서도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자들은 분배를 철회할 수도 있는 증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주 안에서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 앞에서 논의된 바 있는 P. Ups. Frid 1과 BGU 86은 이러한 협의의 전형적 예들이다. 이 협약 증서들은 재산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거기에 부여된 권리의 종적 서열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사실은 비유적 차원에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언약적 토지 사용 허가에 완벽하게 적용되어 진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이 증서들이 창세기에서 berit의 대용어로서 즉 비유적으로 땅의 허락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데는 난점이 있는데, 그 난점은 이 증서들이 “기록된 협약 증서”(syngrafe) 또는 “공증된 합의 선언”(omologia)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기록된 협약 증서” 또는 “공증된 합의 선언”이라는 개념은 berit라는 개념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자들의 개입이나 공증된 증서를 문서로 만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 홀로 행동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이 증서들의 내용은 증여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상속 의사이다. 그리스 법과 그레코-이집트 법에서는, 이 상속 의사를 diatheke라 하고, 상속의사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의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를 diatithesthai라고 한다. 이 증서들의 이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그레코-이집트 법에서는 neologism syngrafodiatheke라는 법률 전문 용어가 만들어 졌는데, 이 용어는 형식적 차원에서 협약 증서이며 동시에 내용적 차원에서 유언장인, 문서화되어 공증된 증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전 3세기 초, 톨레미 왕조 시대의 이집트에서는, diatheke라는 단어가, 유언장 형태로 된 유언장이건, 협약 증서의 형태로 된 유언장이건 상관없이, 어떤 상속 의사도 가리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적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diatheke가 사용된 용례가 직접적으로 검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간접적 차원에서, 주전 285, 284, 혹은 283년에 만들어진 한 증서, 즉 LXX인역과 동시대의 한 증서는 결혼 협약 증서의 유언적 내용을 syngrafe kai omologia tade dietheto Dionusio라고 부른다. 이 유언 의사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diatheke라는 명사와 동일한 의미론적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LXX인역 역자들은 히브리어 berit에 상응하는 단어로 그리스어 diatheke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전 3세기 이집트에서 이 단어는 땅과 같은 재산의 증여를 언급하는 말로서, 특히 상속자들에게 사용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는 증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상하 두 계급의 권리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적 구성은 땅을 중심으로 한 두 당사자간의 관계, 즉 한편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동물과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뛰어난 비유를 제공했던 것이다. 살아 있는 피조물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들에게 땅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를 수여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서 얻을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우 번역)